

<p>여야 할 市稅에 대하여는 증전의 예에 의한다.</p>	<p>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받은 區廳長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 決定하고 그 內容을 申請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.</p>
<p>서울特別市都市가스事業者에 대한 市稅不均一課稅에 관한 條例案</p>	<p>第5條(施行規則) 이 條例의 施行에 관하여는 필요한 事項은 規則으로 정한다.</p>
<p>第1條(目的) 이 條例는 都市民의 生活便益 圖謀 및 快適한 都市環境을 위하여, 都市 가스事業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一般都市가스事業者 및 가스都賣事業者 (이하 “都市가스事業者”라 한다)에 대하여 地方稅法 第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稅의 不均一 課稅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.</p>	<p>附 則</p> <p>①(施行日) 이 조례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.</p> <p>②(適用時限)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1994年 12月 31日까지 適用한다.</p>
<p>第2條(不均一課稅) ①第1條 規定에 의한 都市가스事業者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市稅를 100분의 50 輕減한다.</p>	<p>附 則</p> <p>이 조례는 199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.</p>
<p>1. 取得稅</p> <p>都市가스事業에 직접 使用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土地(事業 許可를 받기전 6月이내에 取得한 土地를 포함한다) 및 建築物에 대한 取得稅</p>	<p>서울特別市駐車場에 대한 市稅課稅 免除에 관한 조례 증개정 조례안</p> <p>서울特別市駐車場에 대한 市稅課稅免除에 관한 조례 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
<p>2. 登錄稅</p> <p>都市가스事業과 관련된 財產權 기타(자동차의 등록을 除外한다)에 관한 등기 및 등록에 관한 登錄稅</p>	<p>第3條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.</p> <p>③第2項에 規定한 駐車場의 年間 수입금액과 공시시가에 대하여는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
<p>②都市가스事業者가 取得 또는 등기, 등록한 財產을 取得 또는 등기, 등록일로부터 각각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소유의 業務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취득 후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는 이미 免除한 取得稅 및 登錄稅를 각각 追徵한다.</p>	<p>1. 年間 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年間(直前年度 6月 1日부터 當該年度 5월 31日까지)의 수입금액으로 한다.</p> <p>2. 수입금액의 계산기간 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年間 수입금액의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.</p>
<p>第3條(事務處理의 委任)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不均一課稅에 관한 事務는 當該 課稅客體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區廳長에게 委任하여 處理한다.</p>	<p>年間收入金額 = $\frac{\text{營業期間중의 收入期間}}{\text{營業期間(日數)}} \times 365$</p>
<p>第4條(輕減申請) ①이 條例의 規定에 의하여 不均一課稅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事實을 증명할 수 있는 書類를 갖추어 관할 區廳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.</p>	<p>3. 공시시가는 당해연도의 공시시가를 말한다.</p> <p>부칙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②(適用時限)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</p>